

2017학년도

# 학생생활규정

2017. 03.



광주제일고등학교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인권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과 관련하여 학급자치회의, 학생회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학생은 학교폭력 및 금품과 관련된 조사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한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⑮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⑯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⑰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 제8조(교사에 대한 존경)** ①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교권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② 교권을 손상시키거나 지도 불이행할 때에는 바로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장 학생회

**제9조(목적)**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자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아 집행중인 회원은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 권리가 정지된다.

- 제11조(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갖고 활동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본 회의는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지역 사회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과 건전한 동아리 활동
5.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6. 학교 교칙 제·개정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활동
7.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8.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제13조(학생회의 지도 및 육성)** ①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에 따라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본회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자문위원회를 두고, 학생회 활동 사전, 사후에 학생회 활동을 지도·자문한다.

③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의 학생회지원비 범위 내에서 학생회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활동의 제한)** ① 본 회의 회원은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② 학생회는 학교장의 직무에 관한 행정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5조(회칙의 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6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본 교내에 둔다.

**제17조(임원의 구성과 직무)** ① 임원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 부서를 대표하고 그 부의 업무를 집행한다.
4.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자격)**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 성적 제한은 두지 않는다.

1. 평소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2.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단 선도위원회 심의로 사면 받은 학생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 ① 학생회 회장과 1·2학년 학생회 부회장은 전 회원의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은 학생생활부장의 조언을 받아 학생회장이 추천하며 각 부서의 차장은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각 부서의 장 등이 협의하여 학생회장이 각각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학생회장단 임명일로부터 차기 학생회장단이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전이라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잔임 기간이 5개월 이상일 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학교장은 부득이한 경우 임원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부서)**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하며, 필요시 대의원회의의결을 통해 부서를 조절할 수 있다.

1. 총무부 : 학생회 사업 계획 및 예산을 관리하며 학생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는 부서
2. 학습부 :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는 부서
3. 환경부 : 학교 내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학교 단장에 노력하는 부서
4. 봉사부 : 교내 및 교외의 모든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부서
5. 체육부 : 학생들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부서
6. 선도부 : 교내 질서와 규율 확립에 노력하고 학교 분위기를 바로잡는 부서
7. 홍보부 : 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본교를 알리고 안내하는 부서
8. 정보부 : 학교 내 알림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부서
9. 창체부 : 동아리 부서 관리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
10. 학예부 : 교내에 전반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하는 부서

② 부서의 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1인의 지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의 중요한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대의원 회의가 위임하거나 요구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또는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의 집행)**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생생활부장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6조(대의원 회의의 구성)** ① 대의원 회의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학급 대의원은 제47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대의원 회의의 기능)** 대의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생회의 사업 계획,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3.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4.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생회 회장·부회장의 탄핵권
6. 기타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대의원 회의)** ① 대의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재적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회 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의제와 의안을 작성하여 학생생활부장의 지도·자문을 받아 학생지도·자문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대의원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지도·자문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생활부장으로 한다.

③ 학생지도·자문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부장 및 각 부서의 지도·자문위원 등으로 운영지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기능)** 학생지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 회의 활동을 사전 또는 사후에 지도·자문한다.

1. 본 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1조(경비)** ① 본 회의 경비는 학교예산의 학생복지비 중 관련 예산으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경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도의 8월말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의 편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계 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지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 편성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예산안은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예산의 집행)** ① 학생회장은 학생생활부장의 지도·자문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② 예산안의 확정이 지연되어 학생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학생지도·자문위원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한 경비의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제35조(결산)** 임기 만료일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학생운영지도·자문위원회의 지도·자문을 받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년별 3명의 반장으로 구성하되 반장이 후보자일 때는 부반장이(이하 대표 순)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부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은 투·개표 업무 종사원을 겸한다.

**제37조(선거권)** ① 선거권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아 집행중인 회원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 명부로 대치한다.

**제38조(선거의 시기)**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선거는 7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궐위된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의 잔여 임기가 5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불가피한 행사 개최, 학사력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선거의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주일 전까지 선거 일시를 공고한다.

**제39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학생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본 교의 학생이어야 한다.



② 학생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는 학생생활규정 제18조가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입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학생회장은 각 학년별, 부회장은 해당 학년 5%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추천서 1부
3. 3인 이내의 참관인 명단

② 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1시간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날까지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선거 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선거전일 17시까지, 선거운동 장소는 교내로 한다. 단, 제44조 2항 내지 3항에 따른 결선투표와 재선거시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 운동에 사용할 벽보(학교홈페이지용 포함)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식(벽보의 종류, 장수, 크기 등)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사진, 공약 구호를 기재한다.

④ 선거 운동에 서면의 자료(학교홈페이지용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소견 발표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장소와 일자에 합동 소견 발표회를 1회 개최한다.

② 각 후보자는 1인의 찬조 발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소견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며, 각 후보자 발표 직전에 각 찬조 발표를 실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소견 발표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투표와 개표)**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직접·비밀투표로 한다. 단, 학교 상황에 따라 전자 투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그 투표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장소를 지정하고 기표장소와 투표함, 참관인석 등을 설치하며,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인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공정한 투표를 진행되도록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결석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주관하에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개표하여야 한다.

④ 각 후보자가 정한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제44조(당선자 결정)** ① 개표 결과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종료 후 지체 없이 당선자를 정하여 공고하고 학교장에게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재선거 및 보궐 선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제44조 제3항의 경우

2. 당선자가 제3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입후보자가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선거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인한 무효를 소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의결한 경우

4.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5. 입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②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되고 그 잔여 임기가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부회장만이 궐위된 경우에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46조(기타 사항)**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기타의 사항은 회칙과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7조(학급회)** ① 구성 : 반장 1인, 부반장 1인, 대의원 1인, 서기 1인, 각 부의 부장 1인

② 부서 : 학급회에는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선도부, 봉사부를 둔다.

③ 임원의 입후보 자격 및 임원 자격 정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부반장, 대의원은 타의 모범이 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있는 자로, 학급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2. 반장, 부반장, 대의원의 입후보자는 직전 학년에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한다.

3. 반장, 부반장, 대의원이 학년 중에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직에서 해임된다.

4. 본 회칙에 준해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는 학급단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학생생활부와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실시토록 한다.

④ 학급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은 학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한다.

2. 학급회의 사회는 대의원이 맡으며, 권위 및 유고시는 반장이 맡는다.
  3. 학급 임원의 임기는 제20조를 준용한다.
  4. 학급 임원은 담임선생님께 적극 협력하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급 내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학급 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등 학급 운영에 적극 노력하지 않을 때에는 선도위원회 심의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 ⑤ 업무 : 학급회는 학급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의제에 따른 실천사항 수립
  3. 건의 사항 발의
  4. 기타 토의 사항
- ⑤ 회의 : 학급회의는 교육 과정상 자치 활동 시간의 정기 회의와 학급 재적의 1/5이상 발의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운영된다.

### 제3장 선도위원회

**제48조(목적)** 선도위원회는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에 의거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9조(선도 원칙)** ① 학생 조사 및 지도에 있어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 지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응보보다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처분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제50조(선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선도처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부장, 해당 학년 부장, 학생생활부 교내, 학생생활부 생활교육, 해당 학년 생활지도 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생활부장은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본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선도위원회의 기능)** ①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선도를 요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집되어 이를 심의한다.

② 학교폭력과 관련된 비행 행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52조(사안 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제53조(학교장의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선도처분

**제54조(선도처분의 종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훈계는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지도한다.
- ② 학교 내의 봉사는 3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③ 사회 봉사는 3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④ 특별 교육 이수는 5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⑥ 퇴학처분

**제55조(선도처분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등교시켜 수업을 받되, 학교장 재량에 의해 학교 내의 봉사 활동을 하고,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들의 업무 보조, 교재·교구 정비 등)

② 사회 봉사는 지도 기간 중 특별 과제물, 반성문 작성 등의 지도를 받고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봉사 활동과 구분하여 처리하며, 학교장 재량에 의해 지역 행정 기관(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공공 기관(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사회 복지기관(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등에 위탁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봉사 기관으로부터 봉사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③ 특별 교육 이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감이 위탁한 특별 교육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1.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
2.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 치료 학교의 교육 이수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학생 야영장, 수련원, 교육원, 폐교 학교 등)

5.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 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는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반성의 기회를 준다. 이 기간은 무단결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출결사항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단, 출결사항 특기사항란에 무단결석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⑤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된 자를 말하며,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출석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학생생활부장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선도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 하에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생을 선도적 차원에서 학교 내 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사면)** 제 54조의 벌을 받은 바 있는 학생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현저한 선행 활동을 하였을 때, 선도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사면한다.

**제57조(평가)** 제54조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행동 평가에 반영한다.

**제58조(기준)** 선도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9조(심의 절차)** ①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에 해당되는 지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 의견을 듣고, 담임 교사의 의견과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선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③ 퇴학처분은 반드시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60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②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62조(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의 고사 응시)** 선도처분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3조(선도처분의 내용 경감)** 학교장은 벌을 받는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 교사 및 진로 상담 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지도 기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4조(벌의 기간 해제)** ① 벌 받는 기간 해제는 학생생활부장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담임 교사 및 진로 상담 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해제를 건의하여 해제한다.

② 벌 받은 학생은 앞으로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학생 복학)** ① 학생의 재입학은 2~3월 8~9월에 실시하며, 편입학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 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전학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교육감, 교육장은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제5장 용의·복장 및 기타 생활

**제66조(두발)** ① 두발에 있어서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제67조(신발)** ① 신발의 색상은 자유이며, 간편하고 활동적인 운동화를 신는다.

② 슬리퍼, 샌들, 고무신, 장화는 금한다.

**제68조(가방)** ① 가방의 색은 자유로 하며, 교과서를 휴대할 수 없는 작은 가방을 제외하고 모든 가방을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복장)** 규정된 교복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구매하여 착용하고, 학생회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으며 교복의 형태는 변형하지 않는다.

① 동복의 경우

1. 검정색 자켓과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자켓 속에는 Y셔츠 또는 폴라를 입는다.
2. 혹한기에는 Y셔츠 속에 폴라를 입을 수 있으며 조끼나 코트착용도 가능하다.
3. 폴라, 조끼, 코트의 색깔은 형광색, 빨강색, 진노랑색 등의 원색계통은 불가하며 다른 색(하얀색, 회색, 곤색, 검정색 등)은 허용한다.

② 춘추복의 경우

1. 춘추복은 별도로 없으며, 동복의 자켓을 벗은 상태에서 동복바지에 하얀 Y셔츠를 입은 상태를 말한다.
2. 추위 때문에 검정색, 곤색 계통의 조끼(가디건)나, 하얀색, 회색 계통의 폴라(Y셔츠 속으로)를 입을 수 있다.

② 하복의 경우

1. 연두색 세로줄 무늬 반팔 Y셔츠와 곤색 바지를 입는다.
2. 더운 날씨에 교내에 한하여, 체육복을 입을 수 있다.

**제70조(명찰)** ① 교내생활(등교 후부터 하교 전까지)에서는 반드시 명찰(또는 학생증)을 패용한다.

② 교외에서는 명찰(또는 학생증)을 패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71조(실내화)** 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② 실내화를 신고 교문 밖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제72조(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① 교내에서 전자기기(휴대폰, MP3, PMP, 카메라 등)는 원칙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② 교육활동과 수업 중 전자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단, 해당 교사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허락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활동과 수업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1회 적발 : 반성문 1회 쓰기 및 1일 강제보관
2. 2회 적발 : 반성문 2회 쓰기 및 3일 강제보관
3. 3회 적발 : 반성문 3회 쓰기 및 5일 강제보관
4. 4회 이상 적발 : 선도위원회에 회부

④ 학년 또는 학급 단위에 의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기기

를 수거·보관하고 일과 후에 배부할 수 있다.

⑤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3조(외출)** ① 등교 후 교문 밖으로 나가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증명서(외출증, 조퇴증)를 발부하여 수위실에 제출하고 나가야 한다.

**제74조(소지품 검사)** 흉기, 화재도구 등과 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 학교의 안전을 해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음란물,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향정신성 약물,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 제6장 교육벌

**제75조(정의)** 교육벌은 교사가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혹은 반복적·지속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형태의 체벌을 대체하여, 학생을 훈계·훈육하는데 사용되는 벌의 종류를 의미한다.

**제76조(목적)** 교육벌은 교사로 하여금 인권지향적인 선도활동을 지향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적인 목적으로 교사에 의해 행해진 벌을 수용함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행동수정을 가능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7조(체벌 금지)** 다음 각 호는 교육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금지된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형태의 기합
4.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78조(사전 확인)** ① 교육벌은 학생과의 상담 및 훈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수정되지 않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벌의 종류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교사는 벌을 내리기 직전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벌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교사는 교육벌을 주기 전 학생에게 교육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벌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교육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생이 교육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교육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육벌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생활기록부 행동발달 평가의 불이익



2.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제79조(교육벌의 행위자)** 교육벌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조치이다. 교육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이 행한다. 다만, 학생생활부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생활부 교사가 행할 수 있다.

**제80조(교육벌의 제한)** 교육벌을 내리는 것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이유 없이, 정당한 교사의 개인적 훈계를 어겼을 경우
2. 남의 자유, 권리, 재산을 침해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경우
3. 생활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가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교사의 정당한 수업활동을 방해한 경우
5. 근태상황(지각이나 조퇴, 결과)이 불성실한 경우
6. 언행이 바르지 못하여, 교사에게 불손하게 대한 경우
7. 흡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이나 음주를 한 경우
8. 기타, 선도 규정 '벌의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81조(교육벌의 종류)** 교육벌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종류로 한다.

1. 서 있게 하기(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2.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3.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4. 방과 후, 잔류 활동
5. 쉬는 시간 및 점심·저녁 시간 교내 환경 정화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6. 캠페인 활동
7. 특별 과제 부여(감지 쓰기 및 책 옮겨 적기 등)
8.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와서 대기하기
9. 수업시간 학업 점수 감점
10. 교실 퇴장 후 격리 교실 수용
11. 기타 여타의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학생의 인권을 고려한 종류의 교육벌

**제82조(사후조치)** ① 학생은 제78조 제4항의 교육벌 외 다른 조치를 원하지 않는 한, 교사가 내린 교육벌 처분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교육벌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이 제대로 교육벌을 이행하지 않거나 문제가 되었던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교사는 동일한 혹은 다른 종류의 교육벌을 가중하여 줄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문제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3조(전체 대상 교육별 금지) 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학생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교육별을 금한다.

제84조(교육별 장소) 교육별은 현장이 가급적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로 한다.

제85조(벌칙) 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 교사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등 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제86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적용 범위)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8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생활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과 학생생활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9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교사대표 4인, 학생 대표 4인, 학부모 대표 3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

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2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3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적 관행을 참고로 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1 [벌의 기준]

구분	항	내 용	선도처분의 내 용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징지	퇴학처분
제1조 예 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4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5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	—				
제2조 준 법	6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	—				
	7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8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				
	9	◦수업 준비, 청소, 주변 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				
	10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1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12	◦인장 및 재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13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14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제3조 수 업	15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17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18	◦교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19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20	◦백지 동행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21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갈취한 학생	—	—	—	—	—	—
	22	◦교육활동과 수업 중 교사의 허락 없이 전자기기(휴대폰 포함)를 사용한 학생	—	—	—			
제4조 근 태	23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한 학생	—	—				
	24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25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26	◦무단 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27	◦15일 이상의 무단 결석을 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				
	28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	—	—	
	29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학생	—	—	—	—	—	—

구분	항	내 용	별 의 내 용					
			훈계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제5조 약 물	30	◦흡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	—
	31	◦흡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또는 음	—	—	—	—	—	—
	32	주가 상습적인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
제6조 폭 력	33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	—	—
	34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	—
	35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	—	—	—	—
	36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	—	—
	37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	—	—
	38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39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거나 집단 따돌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	—	—	—	—	—	—
제7조 퇴 폐 행 위	40	◦도박을 한 학생	—	—	—	—	—	—
	41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42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43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44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45	◦음란, 폭력 동영상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업로드하거나 유포하여 물의를 빚은 학생	—	—	—	—	—	—
제8조 금 품	46	◦금품을 절도거나 미수에 그친 학생	—	—	—	—	—	—
	47	◦상습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도한 학생	—	—	—	—	—	—
	48	◦공납금을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학생들로	—	—	—	—	—	—
	49	부터 금품을 걷은 학생	—	—	—	—	—	—
	50	◦금품을 강제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속여	—	—	—	—	—	—
	51	서 빼앗은 학생 ◦타인을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은 학생	—	—	—	—	—	—
제9조 집 단 행 위	52	◦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53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反)하는 교내 동아리를 조직 혹은 참여해 활동한 학생	—	—	—	—	—	—
제10조 성 관련 비행	54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학생	—	—	—	—	—	—
	55	◦성을 매수한 학생	—	—	—	—	—	—
	56	◦성매매를 주선, 알선한 학생	—	—	—	—	—	—
	57	◦강제 추행 및 OO을 저지른 학생	—	—	—	—	—	—
	58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학생	—	—	—	—	—	—
	59	◦장애학생(특수학생)을 대상으로 54항~58항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단계의 징계를 가중 처벌한다.	—	—	—	—	—	—

구분	항	내 용	별 의 내 용					
			훈계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제10조 기 타	60	◦교육별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	
	61	◦교육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	---	---	---	
	62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지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63	◦본 지도 기준 외의 것은 선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